

## 議案檢討報告書

1. 提案者：大田直轄市長
2. 件名：大田直轄市綜合貯炭場및燃料團地造成條例廢止條例案
3. 案件要旨：別添參照
4. 檢討意見：別添參照

위 議案에 대한 檢討 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.

1993年 12月 日

産業建設委員會

專門委員 金完圭



大田直轄市綜合貯炭場燃料團地造成條例廢止條例案

# 檢 討 報 告 書

1993. 12

産 業 建 設 委 員 會  
専 門 委 員

大田直轄市綜合貯炭場및燃料團地造成條例廢止條例案

## 檢 討 報 告

이 廢止 條例案은 1993年 11月 20日 大田直轄市長이 提出하여 11月 25日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음.

### 1. 提案理由

本 條例는 都市公害 除去를 目的으로 都心에 散在되어 있는 煉炭 工場을 市外廓으로 移轉하기 爲해 制定(1974. 9. 12. 條例 第604 號)하여 1976年度에 燃料團地가 造成 完了되어 2개의 煉炭工場 (합동, 동성)을 既 稼動中이며 燃料의 轉換으로 인한 煉炭 需要의 減少化趨勢로 同條例의 存置 必要性이 없게 되어 이를 廢止하려는 것임

### 2. 主要骨子

- 大田直轄市綜合貯炭場및燃料團地造成條例의 廢止  
( 施行日 : 公布한 날부터 施行 )

### 3. 檢討意見

- 이 條例는 燃料需給의 圓滑을 기하기 위하여 1974. 9. 12 制定하여 1976年度에 大德區 新垈洞에 18,277坪 規模로 합동煉炭과 동성煉炭 工場을 誘置하여 燃料團地를 造成하였음.

- 石炭産業法 第23條에 石炭 加工工場의 郊外 移轉·團地化 또는統합을 誘導하기 위하여 市·道知事が 燃料 團地 造成등 必要한

對策을 講究토록 規定하고 있으나 石炭 産業이 下向産業으로 指摘되고 있으며, 그 동안 貯炭場 및 燃料團地의 擴張 事例가 없는

점을 考慮할때 現實性이 없으므로 늦은 감은 있으나 廢止함이 加할 것으로 思料됨.